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범죄자를 강제퇴거 대상에 명시〉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52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5. 11. 18.
3. 회 부 일: 2025.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강제퇴거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크게 저해되고 있는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한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마약류범죄 등 중대범죄를 범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사유에 내란·외환죄, 살인·강간·추행·강도죄, 성폭력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등을 추가하고(안 제46조제1항제13호의2),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사유에 내란·외환죄, 살인·강간·추행·강도죄를 추가하려는 내용임(안 제4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 13. (생략) <u><신설></u>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u> <u>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u> <u>나.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u>

	<u>죄</u> <u>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u> <u>(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u> <u>의 성폭력범죄</u> <u>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u> <u>률」 제58조, 제58조의2,</u> <u>제59조부터 제61조의 죄</u> <u>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u> <u>에 관한 법률」 제5조의2,</u> <u>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u> <u>의9(제4항의 죄는 제외한</u> <u>다) 및 제11조의 죄</u> <u>바. 「국가보안법」 제3조부</u> <u>터 제13조까지의 죄</u> <u>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u> <u>한 법률」 제4조의 죄</u> <u>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u> <u>특별조치법」 제2조, 제3</u> <u>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u> <u>5조의 죄</u>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 2호, 제12호의2, <u>제13호</u>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15. ----- ----- ----- <u>제13호, 제</u> <u>13호의2</u>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u>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u><신설></u> <u><신설></u> 3. (생략)	-----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가. 제1항제13호의2가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u>나. 제1항제13호의2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u> 3.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가져야 하고, 일반체류자격은 90일 이내의 관광,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음¹⁾.

또한, 현행법은 체류자격을 위반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²⁾.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아울러,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강제퇴거 시키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을 위한 선박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강제퇴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현행법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⁴⁾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 마약 등 이른바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과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강제퇴거에 관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좌 동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안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및 영주자격자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자를 추가 신설하면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규범력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라 할 것임.

특히 강제퇴거는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국내 체류 자격과 생활기반을 무력화하는 침익적 처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준수가 보다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는 영역인바, 대상범죄의 세부적인 종류를 현행과 같이 행정규칙에 규율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다만,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경우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을 제외하는 사유가 불명확한 바 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관한 현행 시행규칙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개정안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제13호의2
-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및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의 죄를 범한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및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

또한, 개정안 제46조제1항제15호와 같은 항 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다른 종류의 범죄행위를 부령에 또다시 위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죄를 법률 혹은 부령에 규정할지에 대해 구분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법률의 유보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7